

< 2026년 보세구역관리개정사항 - 교재순 >

● 관세법령 전체 ★★ - 타법 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 기획재정부령 --> 2. 기획재정부장관 --> 3. 기획재정부 --> 4. 통계청장 --> 5. 산업통상자원부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7. 환경부 --> 8. 특허청 -->	1. 재정경제부령 2. 재정경제부장관 3. 재정경제부 4. 국가데이터처장 5. 산업통상부 6. 산업통상부장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지식재산처

● 교재 319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교재 322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품(중간제품·시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와 제품의 품질검사·테스트 등을 포함한다)·포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또는 연구·개발 장소

● 교재 322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단일보세공장 2개 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할지 세관장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	① 단일보세공장 2개 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단서삭제)

● 교재 323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장 또는 제조 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없이 연구·개발 장소만을 보세공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6.4. 신설) 6. 영 제71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이 우려되는 경우(이 경우 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와 1년의 특허기간을 조건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 교재 32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반입후 수입신고물품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반입후 수입신고물품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보세공장이 아닌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교재 32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③ 반입대상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 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7. ~ 12. (생략)	③ 반입대상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 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26.4.) 7. ~ 12. (현행과 같음)

● 교재 32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신청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① 신청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사용 전인 경우에는 현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교재 326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⑥ 반출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신고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등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서에 보세운송신고번호, 반출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	⑥ 반출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출신고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등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서에 보세운송신고번호, 반출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

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호까지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	---

● 교재 328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③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원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원재료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원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 보세공장이 아닌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원재료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 교재 332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⑧ 완료보고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⑧ 완료보고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 교재 333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⑧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호의2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⑧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호의2서식)를 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	---

● 교재 33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중 시험·연구용 물품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4.3.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 교재 337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시제품·견본품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해당 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되지 않는 물품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시제품·견본품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보세공장이 아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되지 않는 물품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반출할 수 없다.

● 교재 342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여부와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의 자율점검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당해 연도는 특례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 제>

● 교재 343~34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제23조에 따라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 물품은 제외한다. 2. ~ 12. (생략)	1.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제23조에 따라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먼저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 물품으로서 해당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면제도 받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2. ~ 12. (현행과 같음) 13. 제17조의2에 따른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 신청, 반출입 및 보세운송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은 사전에 별지 제7호의4서식으로 장외일시 장치 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14.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5. 제26조에 따른 내국작업의 허가 신청, 내국작업종료신고 및 이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교재 34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용신고, 보수작업 내역,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물품 반출입 내역을 보세사가 각 호별로 자체 기록·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재 34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⑤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소유의 차량 또는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제출하여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 **교재 34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의 자율점검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교재 348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④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공고 후 2개월 이내 신규 보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관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교재 35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① 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보세전시장에서 전시·사용·시음할 목적으로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

● 교재 35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내국 물품(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에 한함)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교재 358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허)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특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세관관할구역에 달리하는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 설장을 특허 및 관리감독할 수 있다.

● 교재 369페이지

1.개정 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이하	2억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2.개정 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이하	1억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교재 382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3. 매장면적 확대(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매장면적 축소	3. 매장면적 축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확대 가.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 나.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에서 50㎡ 이내로 확대

● 교재 38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청렴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6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 2. 타기관 부패방지·청렴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업무자 3. 경찰관 등

● 교재 385~386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 제25조 보세산업지원과장	보세산업과장

● 교재 390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④ 반입검사신청예외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반입검사신청예외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교재 394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③ 이동판매방식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이동판매방식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교재 39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 ⑦ (생략) <신 설>	제35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한 내국물품을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내국물품을 현장인도하기 위한 인도장소를 시내면세점 내에 운영할 수 있다.

● **교재 396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인도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후 인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구매한 내국물품, 세관장이 구매내역 등을 고려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한 여행자가 구매한 내국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제외한다)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의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인도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판매·인도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별지 제14호의8서식)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인도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에 구매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발행·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방식에 의한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후 인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영 제213조의3제3항에 따라 현장인도를 제한한 여행자가 구매한 내국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제외한다)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의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인도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판매·인도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별지 제14호의8서식)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재 399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④ 인도자는 첫 항공편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근무배치 인도자는 인도업무가 발생하는 첫 여객기(선) 출발 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여객기(선)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어 공항·여객터미널 등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간까지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교재 400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⑨ 송부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교환권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부 할 수 있다.	⑨ 송부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된 교환권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재 404~405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교환, 환불요청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 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3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단서 삭제>	①교환, 환불요청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 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및 택배를 통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⑤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 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하려는 경우 입국시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및 유치한 후 교환·환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된 물품은 제3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및 유치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다. 이 때 직접 방문 또는 국내우편, 택배를 통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으며, 국내로 반입한 이후 교환시에는 동일물품(색상·크기 등이 다른 동일 모델의 물품을 포함한다)에 한해 교환할 수 있다.

1.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

2. 교환·환불하려는 물품을 과세통관한 경우(자진신고한 물품에 한정한다)

④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또는 택배를 통하여 교환·환불 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제33조의 판매절차를 준용하여 교환내역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며 반환된 금액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 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 교재 408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 ⑦ (생략) <신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한다.